

#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##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15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### 1. 제안이유

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수강료 관련 조항 및 사용료 면제 조항을 조례로 변경하는 한편, 수강료를 수강시간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여 수강생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교육의 수혜범위를 넓히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수강시간에 따라 수강료를 차등 징수(안 3조)

나. 규칙에 있는 수강료 징수, 면제 및 반환사유를 조례로 변경하고 면제대상자를 확대(안 3조의2, 안 3조의3)

다. 시설 사용료 면제사유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(안 9조)

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, 제137조, 제139조  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21조, 제22조의2
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,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    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(별첨)

##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수강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.

③제1항의 이용자는 수강료를 개강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수강료 면제) 시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에 의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수강료의 면제는 본인이 원하는 1과목에 한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3.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회관 이용 대상자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5.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
6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지원대상자
7.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

제3조의3(수강료 반환) ①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

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교육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

②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.

제8조 중 “별표1”를 “별표 3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사용료의 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2. 지역사회단체 중 구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때
3. 기타 공공목적 및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

별표 1을 별표 3으로 하고, 별표 1, 별표 2,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[별표 1]

수강료 기준(제3조 관련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강시간     | 수강료(원)    | 비 고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평생교육강좌<br>(기술, 전문교육, 취미,<br>교양, 건강, 외국어, 문화 등 | 주 2시간 이하 | 월 5,000원  | • 재료비는 본인<br>부담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3시간 이상 | 월 10,000원 |                 |

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[별표 2]

수강료 반환기준(제3조의3관련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반환사유 발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반환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의3제 1항제 1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|                        |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3조의3 제1항제 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경우  |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 | 강의개시 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총 강의시간의 1/3경과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총 강의시간의 1/2경과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총 강의시간의 1/2경과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반환하지 아니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강의개시 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강의개시 이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(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,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[별표 3]

**구미시평생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기준(제8조 관련)**

| 시설구분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사용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본사용료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본<br>시설 | 대강당                   | 평일주간 1회<br>(4시간이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0,000원 | <input type="checkbox"/> 4시간이상 초과시 매시간당<br>기본사용료의 25%가산한다.<br><input type="checkbox"/> 토요일, 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<br>20%를 가산한다.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20%를<br>가산한다. |
|          | 회의실    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,000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강의실    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,000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대<br>시설 | 냉·난방<br>(대강당)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냉방 1회<br>(4시간이내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난방 1회<br>(4시간이내) | 40,000원 | <input type="checkbox"/> 4시간이상 초과시 매시간당<br>10,000원을 가산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냉·난방<br>(회의실·<br>강의실) | <input type="checkbox"/> 냉방 1회<br>(4시간이내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난방 1회<br>(4시간이내) | 30,000원 | <input type="checkbox"/> 4시간이상 초과시 매시간당<br>10,000원을 가산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|
| 수강료 면제(반환)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|
| 수 강 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강 좌 명     | ( 반 ) |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 명       |       | 생년월일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   |       | 연 락 처 |  |
| 수 강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 원정 (₩ ) |       |       |  |
| 면제(반환)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 원정 (₩ ) |       |       |  |
| 실제 수강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 원정 (₩ ) |       |       |  |
| 계좌입금<br>통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거 래 은행    |       | 예금주명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계좌번호      |       |       |  |
| 면제(반환)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|
| <p>위와 같이 「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」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라<br/>수강료 면제(반환)를 신청합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 <p>신청인 (인 또는 서명)</p> <p>구미시장 귀하</p> |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|

| 구 분     | 구 비 서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공통서류    | 1) 수강료 면제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면제 증빙서류 | 2) 대상자의 해당증명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에 따른<br/>수급자 증명서</li> <li>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증명서</li> <li>- 주민등록증</li> <li>-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 확인서류</li> <li>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</li> <li>- 주민등록 등본</li> <li>-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li> </ul> |     |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수강료) ① (생 략)<br><u>②제1항의 수강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br><u>&lt;신 설&gt;</u><br><br><u>&lt;신 설&gt;</u> | 제3조(수강료) ① (현행과 같음)<br><u>②제1항의 수강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.</u><br><u>③제1항의 이용자는 수강료를 개강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</u><br>제3조의2(수강료 면제) 시장은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에 의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수강료의 면제는 본인이 원하는 1과목에 한한다.<br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<br>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<br>3.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노인 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회관 이용 대상자<br>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<br>5.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<br>6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|

<신 설>

제8조(사용료) 제4조에 의거 시설  
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  
의한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 
납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시  
의 직접 사용 또는 공익, 기타  
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 
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 
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지원대상자

7.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 
이상인 가족

제3조의3(수강료 반환) ①수강 신  
청자가 수강을 계속할수 없는  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 
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  
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 
한다.

1.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교육  
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 
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  
강을 포기한 경우

②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청  
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.

제8조(사용료) -----  
-----별표 3  
에 -----  
-----.

제9조(사용료의 면제) 시장은 다음  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
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 
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
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
2. 지역사회단체 중 구미시로부터  
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공공목적  
으로 직접 사용할 때

3. 기타 공공목적 및 공익을 위하여  
사용할 때

# 관 계 법 령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7조(수수료)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단서 생략>

## 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5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배우자
2. 자녀
3. 부모
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
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(弟妹)

제21조(교육지원)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(이하 “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

지원을 실시한다

제22조의2(교육기관)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호~2호 생략

3.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

## 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제4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모” 또는 “부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

나.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. 교정시설·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

라. 미혼자{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}

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

1의 2. “청소년 한부모”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.

2. “한부모가족”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.

3. “모자가족”이란 모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

4. “부자가족”이란 부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

5.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,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)의 자를 말한다.

제5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·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

#### □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

제3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 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자의 최저생계비·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.

| 소관 실·과      |       | 평생교육과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과 장   | 김 중 순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  | 황 은 채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자 | 이 현 주<br>(480-4332 ) |